

제260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유승용 의원 대표발의】



2025. 4. 28.

사 회 건 설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경 과

의안 제519호로 2025년 4월 14일 유승용 의원 외 3명으로부터 발의되어 2025년 4월 2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수립에 관한 규정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고, 조례 전문에서 미비한 사항을 개정함으로써 자치법규의 정확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수립의 홈페이지 공개를 매 회계연도의 시작 전에서 회계연도 시작 후 2개월 이내로 개정(안 제5조)

다. 상위법 제명 개정에 따른 정비(안 제9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필요시 반영

다. 입법예고(2025. 4. 15.~2025. 4. 22.) 결과: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 현행 조례의 최종 개정일은 2017. 10. 19.로 상위법령 및 관련 법령의 폐지·개정된 사항이 미반영됨에 따라 해당 사항 반영 및 조례 전반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발의된 안건으로,

□ 주요 내용으로

- 안 제2조(정의)는 “녹색제품”의 정의를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의 정의를 따르도록 규정함으로써 법의 정의가 개정될 때마다 조례를 개정하지 않도록 입법경제성을 제고함.
- 안 제3조(적용대상 기관)는 적용대상 기관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설치 근거 조례를 인용하여 정비하였으며,
- 안 제5조(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는 법¹⁾에서

1) ① 공공기관의 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구매지침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당해 회계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이하 “이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공표하여야 한다.

규정한 기간에 맞춰서 “회계연도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공표하도록 개정함.

- **안 제6조(녹색제품의 구매실적 관리)제1항**은 법의 개정(2011. 4. 5.)으로 구매실적의 “공표” 대상자가 “공공기관의 장”에서 “환경부장관”으로 개정됨에 따라, 해당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공표”를 삭제하였으며,
 - **제2항**은 “공표방법 준용”에 관한 사항으로, 제1항에서 “공표”를 삭제함에 따라 함께 삭제함.
- **안 제9조(판단기준의 설정·관리)**는 관련 법령의 폐지 또는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용어 해석을 명확히 하기 위해 해당 용어가 규정된 조항을 인용함.
 - 참고로, 현행 조례 제1호 및 제3호의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²⁾ 및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³⁾은 폐지되었으며, 현행 제1호에 따른 정의와 개정안 제1호에 따른 정의는 같고, 현행 제3호에 따른 “저탄소 인증 제품⁴⁾”은 개정안 “환경 성적표지 인증제품”에 포함되는 개념임. 즉, 제3호의 정의는 확대되었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2)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라 폐지(2020. 4. 3.)

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정에 따라 폐지(2022. 3. 25.)

4) **환경부고시 「저탄소제품 기준」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저탄소제품”이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환경기술산업법”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에 따라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이하 “환경성적표지인증제품”이라 한다) 중 이 고시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제품(서비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 검토결과

- 현행 조례는 2017. 10. 29.에 마지막으로 개정되어 상위법 및 관계 법령의 개정 및 폐지 등의 사항을 반영하지 못함에 따라 해당 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전반적으로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상위법 및 관련 법령과의 정합성을 제고하였으며, 용어 해석을 명확히 하였고, 입법 경제성을 확보하는 등 조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참고 자료

1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녹색제품”이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8조(녹색제품의 구매이행계획) ①공공기관의 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구매지침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당해 회계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이하 “이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공표하여야 한다.

②공공기관의 장은 이행계획을 수립·공표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고, 시·도지사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이행계획을 종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녹색제품의 구매실적) ①공공기관의 장은 이행계획에 따른 녹색제품의 구매실적을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집계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시·도지사는 시·군·구의 구매실적을 종합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공공기관이 제출한 구매실적이 전년도와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 이상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고,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환경부장관은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실적을 취합하여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6. “저공해자동차”란 다음 각 목의 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이 없는 자동차

나. 제46조제1항에 따른 제작차의 배출허용기준보다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자동차

3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순환골재”란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과정 등을 거쳐 건설폐기물을 제35조에 따른 순환골재 품질기준에 맞게 만든 것을 말한다.

8.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이란 순환골재를 원료로 사용하여 만든 제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8조(환경성적표지의 인증 등) ① 환경부장관은 재료와 제품의 환경친화성을 높이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전문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제품의 환경성에 관한 정보를 계량적으로 표시하는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하게 할 수 있다.